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소병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9636

발의연월일 : 2026. 6. 30.

발 의 자 : 소병훈・이개호・조계원
최혁진・박 정・박희승
강준현・권향엽・부승찬
진성준・안태준・용혜인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인력기준으로 응급의학전문의와 소아응급환자 전담전문의를 필수로 두도록 하고, 그 외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응급실 내원 환자 수에 비례한 인원만큼 응급의학과・내과・외과 등 10개 진료과목 전문의 중에서 선택하여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응급환자의 주요 진료영역인 내과・외과・신경과・신경외과의 전문의가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.

그런데 평일 주간에는 그러한 사정과 외래 진료 및 예약 수술 업무 등으로 인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와의 즉각적인 협진이나 배후 진료가 곤란해져 응급환자의 응급실 수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평일 주간에는 내과・외과・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실 전담전문의로 반드시 두도록 하여 응급환자

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중 “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”을 “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”으로 한다.

②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 등을 응급실 전담 인력으로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평일 주간에는 내과·외과·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응급실 전담 인력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응급실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6조(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)	제26조(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)
① (생 략)	①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②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사, 간호사, 응급구조사 등을 응급실 전담 인력으로 두어야 한다. 이 경우 평일 주간에는 내과·외과·신경과 및 신경외과 전문의를 각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②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·방법·절차 및 업무와 중증응급환자의 기준 등은 권역 내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